

기 안 지

2314

고 시

기 안 자	경부라기형제 경사김석동	전 화 번 호	459	공 보	필 요	불필요
	계장	과장	국장		부사장	시장
협 조	자 명 안 일	부서	과	팀	년	한
기	년	월	일	일	월	일
분 류	기	호	문	서	번	호
경 수	유	신	조	내부 통제 (각안참조)		
제	무	도로 교통법에 의한 제한지시에 관한 고시				
시중 개정 개정						
서울특별시 고시 제 709호 (62.8.25) 도						
로 교통법에 의한 제한지시에 관한 고시"의						
하의 차량등의 통행구분선을 도로중앙선을						
중심으로 정하여 자전거, 우마차 통행의 경우						
도로 행태가 다름때마다 통행구분선이 변경되						
어 편도 4차선 인대 에는 4차선으로						
편도 3차선 인대 에는 3차선으로						
편도 2차선 인대 에는 2차선으로 각각						

확 시 거
10.16

통행제 되어 있어 일반 시민이 도로 통행
구분선을 이해하기 힘들고 혼동을 이끄는

경우가 허다한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
도로 행태가 여하히 변경되더라도 사전에

유마차 외 통행구분선 언제든지 인도로 부러
제1차선으로 통행케 하는 개정 고시를 병행

과 같이 제정코자 합니다

우첨 고시 개정안 1부

"제2안"

수신 수신처 참조

제목 동건

서울특별시 고시 제701호 - (62.8.25)

도로 통행 교통법에 의한 제한 지시에 관하고

병행과같이

시정을 개정 하시기 "보고" "통행" "하갈" 하거나

우첨 서울특별시 고시 제 ~~701~~ 호

수신처 제-제리. 나-나. 서울. 가 11.

"제3안"

수신 3808
공보실장

제목 동건

서울특별시 고시 제 709 호 (62.8.25) 드로
고용행위에 의한 제한 지시에 관한 고시를 별첨

과 같이 개정 되었기 " ~~남은~~ 시보에 등재 하여 주
시기 바랍니다

우첨 서울특별시 고시 제 ~~709~~ 호

(改正案)

서울특별시告示第 ~~62~~ 号령

서울특별시告示第 709 号령 (62. 8. 25) 道
路交通法에 의한 制限 指示에 關한 告

示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

西曆 1964 年 10 月 16 日

서울특별시長 尹致暎

道路交通法에 의한 制限指示에 關
한 告示中 ~~一部~~ 改正

1. 項 道路通行 区分條에 의한 車輛
種의 通行方法中 가, 나, 다, ~~라~~를

다음과 같이 改正 한다

1. 道路通行 区分條에 의한 車輛種의
通行方法

가. 片道 四次線인 境遇

人道로부터 一次線은 自転車 및

牛馬車 二次線은 旅客버스 및 合乘車, 三次
線은 貨物車, 特殊車, 三輪車, 此外 一般

乘用車, 片道 四次線은 一般 乘用車의 通行
道路로 한다

나. 片道 三次線인 境遇

人道路로부터 一次線은 自轉車 및 牛

馬車, 二次線은 一般 乘用車 및 特殊車,
貨物車, 三輪車, 此外 (單車) 旅客버스

㉔ 合乘車輛 二次係 一般乘用車의 通行 道路로 할

㉕ 片道 一次係의 境遇

道路보다 一次係 特殊貨物車, 단차(單車)

自轉車 및 牛馬車, 二次係 一次係을 通行 하는 외에 모든 車輛의 通行路로 할

但 一次係에 通行하는 特殊車, 貨物車 단차(單車) 및 自轉車는 旅客自轉車

停留場의 待期中의 合乘出산 等으로 進 行이 妨害되고 있을 때는 前後 左右를 充

분히 喪失후 他車輛의 通行이 妨害되 지 않는 範圍內에서 最低限으로 第二次

係에 進入 할 수 있다.